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 | |
|-----------|--|
| 사 건 | 2013나7332 대여금 |
| 원고, 항소인 | A |
| 피고, 피항소인 | B |
| 제 1 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소295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4. 16. |
| 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언니 C의 남편인 사실, 원고가 2012. 9. 3. 피고로부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이자 및 반환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의 통장으로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2. 25. 무렵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제1심 증인 C이 "위 돈 중에는 원고의 몫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통장에서 돈이 송금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C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은 원고로부터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C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C에게 1,3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통장에서 2013. 1. 21. 600만 원이 출금되고, 2013. 2. 18. 700만 원이 대체지급된 사실, D의 통장에서 2013. 1. 21. 1,3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1,3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1호증(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 30면)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C의 통장에 1,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비적으로 C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과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원고로부터 명시적으로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점, 민법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가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원고와 C 사이에 상당한 불화가 있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고, 급기야 C은 2013. 1. 21.경에는

가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C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
|-----|----|-----|
| 재판장 | 판사 | 문춘언 |
| | 판사 | 민희진 |
| | 판사 | 이상욱 |